



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안내 〈 장기요양기관 〉

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, 국세행정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.

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에 필요한 영수증을 일일이 수집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**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일괄 수집**하여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「**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**」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귀 기관은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대상에 해당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니, **'21년 귀속 자료를 '22년 1월 7일(금)**(부득이한 경우 1월 13일)까지 **제출**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안내

제출 자료	본인부담금 의료비 자료(보험 + 비보험)
자료 제출 기한	'22. 1. 7.(금) (부득이한 경우 1.13.(목))
자료 제출 방법	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로그인 조회/발급 > 연말정산 간소화 > 영수증 발급처 > 소득·세액공제 자료 제출

2021년 12월 일

세무서장 (관인생략)

자세한 제출 요령은 뒷면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, 관련 문의는
【☎(국번 없이) 126 ⇨ ①홈택스 ⇨ ⑤연말정산간소화】로 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.

'21년 귀속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요령

1 제출 대상 기관

-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른 장기요양기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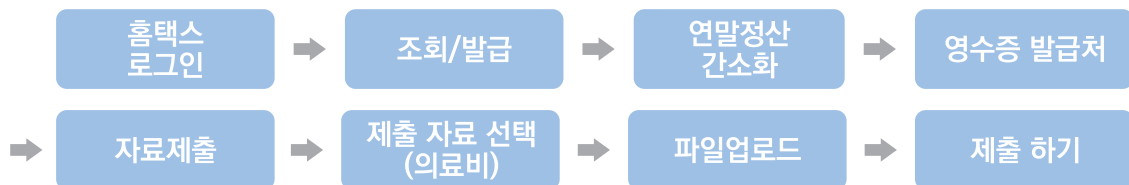
2 제출 자료 : '21년 귀속 본인 일부 부담금 자료

-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40조 제1항 및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 자료

※ 비급여 항목인 식사 재료비, 상급 침실 이용료, 이·미용비 등은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.

※ 본인의 의료비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'자료제출 제외(거부) 신청' 한 의료비 자료는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.

3 자료 제출 방법



- 요양기관의 공인인증서 또는 사업자ID로 로그인해서 아래 ① 또는 ② 방법에 따라 제출
① 텍스트 파일로 제출 : (홈택스)자료실(자료번호 468)의 「'21년_전산매체제출요령 의료비-요양기관」 참조
② 엑셀 서식으로 제출:홈택스)자료실(자료번호 468)의 엑셀서식(의료비)에 기재하여 제출

4 자료 제출 기한

자료제출기한	내 용	일 정
	원칙	'22.1.7.(금) 22시
	부득이한 경우	'22.1.13.(목) 22시
	수정·추가 제출하는 경우*	'22.1.15.(토)~1.18.(화) 18시~22시*

* 간소화 서비스 개통(1.15.) 이후로 접속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근무시간 이후에 제출 가능

5 유의사항

- 제출한 자료 100건 중 오류 10건이 포함되어 이를 수정하여 제출할 경우, 반드시 수정분 10건을 포함한 전체 100건을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엑셀 파일은 5MB이하의 경우만 가능, 그 이상은 텍스트로 변환하여 제출해야 합니다.